

2009 CASRIP Summer Institute를 다녀와서



김 장 훈 교수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글을 시작하며

CASRIP은 Center for Advanced Study & Research on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미국 시애틀의 워싱턴주립대학교 법과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내에 설치된 지식재산 연구 및 교육 전문기관이다. 이번 2009 CASRIP Summer Institute 참가는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특허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이공계 교수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 [T3 - Teaching The Teachers]의 연장선상에 있는 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이었다. 본격적인 학술여행기를 언급하려면 먼저 건축학부 선생인 필자가 하필이면 법과대학에서 주관하는 2009 CASRIP Summer Institute에 참가하게 된 계기와 아울러 건축계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지식재산 교육에 흥미를 갖게 된 이유를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 중에는 학부 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공학종합설계 및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다. 이 과목을 개설하는 학기 초가 되면 필자는 매년 수

강 후 성적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도달하여야 할 세 가지 선택적 목표를 제시하고, 그 중 하나를 택하여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세 가지 선택적 목표란 설계 결과를 첫째 각종 설계공모전에 출품하거나, 둘째 각 학회에서 주관하는 졸업논문 경진대회에 제출 또는 국내외 우수저널에 제출하거나, 셋째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공학설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졸업 후 취업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 자기계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목의 성적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이는 어쩌면 신사협정이 라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모든 학생들이 필자의 권면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의 권면을 따른 학생들 중에는 설계공모전에서 입상하기도 하고 우수저널에 논문이 발간되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해외에서 발간되는 우수국제 저널과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에 학부생으로서 필자와 공동으로 논문이 게재되는 학생이 나오기도 하였다. 물론 논문게재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므로 학생 졸업 후의 일이었다.

필자가 학생들에게 제시한 세 가지 선택적 목표 중 설계 공모전이나 논문게재를 선택한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는 큰 불편이나 어려움이 없었지만, 특허에 대한 구체적 지식이 없었던 필자가 특허출원을 목표로 선택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특허에 대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며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2009년 3월에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이공계 교수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 시리즈 [T3]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큰 마음먹고 2009년 4월부터 상반기 [T3]에 개설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던 중 해외심화 T3 교육 - 2009 CASRIP Summer Institute에 참가하게 되는 좋은 기회까지 얻게 되었다.

출국하기 전(2009년 6월 23일부터 7월 13일)

전국 각지 8개 대학에서 10명의 이공계 교수들이 선발된 후, 해외심화 T3 교육에 참석하기 위하여 총족시켜야 할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제시되었는데, 하나는 6월 23일 오후 서울에 소재한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미국 특허법의 이해」라는 3시간 동안의 영어강의를 수강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그리고 세계지식재산 사무소(WIPO)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IP Panorama 10개 영어강좌를 7월 13일까지 이수하는 것이었다. 「미국 특허법의 이해」는 미국 특허법의 체계와 소송의 절차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강좌로서 CASRIP에서 배우게 될 학습내용을 미리 맛보는 것으로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의미 있는 강의였다. IP Panorama 10개 강좌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10개의 사례로 나누어 각 강좌 당 1개의 사례를 1시간가량 움직이는 그림(animation)으로 보여주면서 각 단계 당 몇 개의 확인 퀴즈를 풀어보게 하는,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재미있고, 그렇지만 무언가를 느끼게 하는 유익한 강좌였다. 워낙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필자인지라 의무로서 제시된 사전학습을 배움의 즐거움으로 일찌감치 마무리하였지만, 특허법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 그것도 영어로 들어야 하는 전문용어는 생소하기도 하였고, 이제는 정말로 꼼짝없이 미국의 법과대학에서 며칠간 강의를 받게 되는구나 싶어 경각심을 갖는 계기도 되었다.

출국 및 도착(2009년 7월 15일 수요일)

비행기 편은 다행히 우리나라 소속 항공사였고 7월 15일 오후 6시에 이륙하였다. 우리나라 소속 항공사라서 '다행'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른 나라 소속 항공사의 비행기로 여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소속 항공사의 기내 서비스는 이미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다른 나라 소속 항공사에 비하여 항공운임은 다소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더 비싼 운임을 지불할 정도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금전적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나라 소속 항공사를 이용할 것을 주저 없이 권하곤 한다.

선발된 이공계 대학교수는 10명이었지만, 이들의 연수를 돕기 위한 한국발명진흥회 직원이 한 사람 더하여져 일행은 모두 11명이 되었다. 한국발명진흥회 직원으로서 학술여행에 합류한 사람은 산업인력양성팀의 원희재 주임이었는데 출국 전 준비 단계부터 귀국하기까지 모든 과정마다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나서서 해결하여 편안한 학술여행이 되도록 일을 꼼꼼하게 챙기는 재원이다.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시애틀까지는 10시간의 비행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우리나라와 워싱턴 주(州) 시애틀 사이에 존재하는 16시간의 시간차로 인하여 달력상으로 출국일과 같은 날인 7월 15일 정오에 시애틀에 도착하였다. 아! 이렇게 동(東)으로 동(東)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서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참 좋으려만. 시애틀 공항으로부터 Van(승합차)으로 30분가량 고속도로를 달려 UW 기숙사 중 우리 일행이 묵기로 되어있는 McMahan Hall에 도착하였다. 시애틀 현지에서는 워싱턴주립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를 UW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다. 기숙사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조립식 건물로 최신식 건물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개별 방을 배정받을 때 각자에게 방의 열쇠와 meal card가 지급되었는데 기숙사 담당자는 meal card는 교내 모든 식당과 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늦은 시간에 기숙사건물을 출입할 때와 어느 때건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오르려고 할 때에는 꼭 필요한 것이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짐을 풀고 컴퓨터에 인터넷을 연결한 후 기숙사 건물 저층부의 옥상으로 나가보니 저 멀리 탁 트인 바다인



다운 캠퍼스였다. 법과대학이 있는 William Gates Hall은 기숙사로부터 10~15분 정도 걸어도 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는데 최근에 지어진 건물답게 유리로 둘러싸인 facade로 인하여 밝은 내부와 가벼운 외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William Gates Hall은 시애틀에 본사를 둔 Microsoft사의 Bill Gates가 자신의 아버지 이름으로 기증한 건물이라고 한다.

첫째 날(2009년 7월 16일
목요일)

첫날은 오전 8시부터 CASRIP 측에서 continental breakfast를 제공하고 오리엔테이션도 있다고 하여 부랴부랴 서둘러 William Gates Hall에 도착하였다. 아침거

리를 챙겨서 강의실로 들어가니 각자의 이름이 적힌 종이 팻말이 좌석마다 놓여있었다. 필자의 이름 팻말이 놓여있는 자리를 찾아 앉고 보니 입이 딱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판레집 두 권과 강의 바인더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걸 언제 다 읽나 하는 고민도 잠시,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자 CASRIP Director Toshiko Takenaka의 환영사에 이어 Summer Institute 참가자 모두가 돌아가며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에 교육생들의 복습을 도울 TA가 소개되었다. TA는 현재 UW 법대 학생이거나 Patent Attorney로서 practice 중인 사람들 중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었으며, 한 사람의 TA 당 6~7명의 교육생이 배정되었다. TA의 의무는 수업을 마친 오후 3시 40분 이후 자신들이 담당한 학생들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는 것과 그

날 강의록을 돌아가며 정리하여 모든 교육생들에게 전자 우편으로 배부하는 것이었는데 후에 이렇게 배부된 강의록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오후 6시에 일행이 모여 기숙사 지하에 있는 cafeteria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기숙사 지하라고 하였지만, 사실 건물의 장변 단변을 따라 두 면이 외기에 접하여 저 멀리 바라보이는 호수와 건물 바로 옆의 울창한 나무숲을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의 반지하식 cafeteria이었다. 기숙사 지하 식당은 아침식사 \$7.25, 점심식사 \$9.50, 저녁식사 \$11.25를 받았는데 일단 입장하면 모든 것을 무제한으로 다 먹을 수 있는 buffet 식으로 운영되었다. 학생들이 매끼를 해결하기에는 비싼 가격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영양보충을 하기에는 적절한 가격과 장소라고 생각했다. 저녁식사를 마친 후 삼삼오오 흩어져 캠퍼스 내부와 외부 주변을 돌아보았는데 나무와 숲과 잔디정원이 어우러진 정말 아름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바로 강의가 시작되었다. 스케줄에 따르면 7월 16일 목요일과 17일 금요일의 수업은 Pre-

34
Invention & Patent

Conference Program으로서 7월 20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Plenary Session 교육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을 띤 것으로서 미국의 특허법 (U.S. Patent Related Law) 전반에 관하여 정리하는 과정이었다. Pre-Conference를 통하여 정리한 과정은 Legal English, Common Law, Trademark Law, Litigation Overview, Trade Secret Law, Copyright Law 등이었다. 둘째 날부터 수업은 오전 8시 40분 정각에 시작하여 오후 3시 40분에 마친다고 하였다. 첫날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Legal English for International Attorneys (Dana Raigrodski): 판례(case)와 관련된 30개의 어휘; 민사(civil)와 관련된 27개의 어휘; 심판(trial)과 관련된 23개의 어휘에 대하여 정의
- Common Law for International IP Attorneys (Signe H. Naeve): 미국의 법체계 및 역사 소개; 미합중국의 정체(政體 Constitution)는 7개 조항으로 구성; Amendment를 통하여 인권보호, 주정부의 인권침해 방지, 사생활권(Right to Privacy); 3권분립(3 Branches of Government); 헌법 3조 1항 (Constitution Article III, Sec. 1)에 의한 연방법원 구성은 94개의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s), 12개의 지역 상소법원 (regional [circuits] Appellate Courts), 연방대법원 (U.S. Supreme Court)
- U.S. Trademark Law Introduction (Michael Atkins): 1950년 채택된 Lanham법에 따르면 상표(trademark)은 출처를 나타내는 모든 것(source indicator)—이름, 모양, 촉감, 소리 등 포함; 상표권의 침해요소(trademark infringement); 구제방법 (Remedies)

둘째 날(2009년 7월 17일 금요일)

아직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서인지 매우 이른 아침인 새벽 4시경에 눈을 떴다. 아니 눈이 떠졌다고 하는 것이 옳다. 시차 탓도 있었지만, 새소리에 깨어났다고 하는 편이 옳을 정도로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해맑고 선명하였다. 잠을 더 청해보았자 소용없을 것 같아 일찌감치 샤워하고 책상에 앉아 책을 보다가 오전 6시 30분경부터 기숙사 지하 cafeteria의 아침식사가 시작되는 시간인 7시 30분까지 기숙사 주변 캠퍼스를 산책하였다. 산책길에 뛰노는 다람쥐들, 그 가운데를 유유자적 거니는 청둥오리 가족 그리고 마

치 필자를 따라오며 노래하듯 앞서거나 뒤서거나 날아다니며 종알대는 각종 새들은 캠퍼스 내 아름다운 건물주위를 감싸며 우거져 서서 굽어보고 있는 나무들과 그 아래로 펼쳐진 잔디와 함께 살아있는 한 폭의 그림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적절한 말이 없었다.

오늘부터는 자신의 이름 팻말을 가지고 원하는 자리 어디에나 앉을 수 있다고 했지? 30년 전 대학생으로 되돌아간 기분으로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하여 William Gates Hall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오늘은 프로그램 참가자 전원에게 locker와 자물쇠가 지급되었다. 무거운 책과 물건을 일일이 들고 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좋았다. 하루수업을 마치고 오후 5시부터 UW 캠퍼스를 남서쪽으로 살짝 벗어난 호숫가의 멕시코 식당 야외에서 환영파티가 열렸다. 음료와 도넛라칩 그리고 멕시칸 치즈피자가 무제한 제공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파티가 끝날 무렵 이탈리아에서 온 교육생 세 명이 이탈리아 노래를 부르자 그 다음으로 미국, 한국, 일본에서 온 교육생들이 그 뒤를 이어 자신들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우리 일행은 '괴수원 길'을 불렀다. 둘째 날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U.S. Litigation Overview (Douglas Stewart): 특허법은 35 USC §100 (general law) 이하, 주요 규정은 §271 (infringement), §284 (damages), §102 (Anticipation), §103 (Obviousness)
- U.S. Trade Secret Law Introduction (Linda Norman): State law에 의하여 유지되며 International Treaties (GATT)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유효; 영업비밀 보호법(Statutory Protection)은 Uniform Trade Act (1979)로서 18 USC §§1831-39, 178 USC §1030, 18 USC §§1341, 1343, 18 USC §§1961-68, 18 USC §§ 2311-33, 18 USC §1029
- U.S. Copyright Law Introduction (Signe H. Naeve): 저작권법 (copyright law)의 유래; U.S. 저작권법 (Copyright Act of 1790, 1909, 1976 Act, 1980 Amendments, 1988 U.S. ratifies Berne, 1998 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1998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셋째 날(2009년 7월 18일 토요일)

오늘은 수업이 없는 주말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일행과

함께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해발 4392 m이고, 연중 만년설로 덮여있으며, 시애틀에서도 보이는 그 유명한 레이니어산(Mt. Rainier)에 올랐다. 레이니어산은 시애틀로부터 남쪽으로 약 87 km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 2시간 30분가량 자동차로 달려 도착하였다.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벗어나 레이니어산이 위치한 동네로 접어들자 활동기금을 모으려고 세차(car wash)를 하고자 손 팻말을 들고 손님을 부르는 초중고 학생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거리에 비하여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비록 자동차로 달렸지만 산에다가가서 오르는 길에 울퉁불퉁한 구간이 적지 않았고 가파른 구간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 독립 기념일로부터 한 달간은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받지 않아서인지 산을 오르는 자동차가 평소보다 많다고 하였는데 주차장에 들어서니 그 말이 실감났다. 산의 한쪽 면에 올라 김밥으로 점심을 먹고 잠시 언덕을 오른 후 아래로 내려와 Paradise라고 불리는 다른 쪽 면을 올라 자동차를 주차시키고 나서 이번에는 첫 만년설이 만져지는 곳까지 오르기로 하고 30분가량 언덕을 올랐다. 저 멀리 언덕진 초장에 사슴 한마리가 평화로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시애틀에서 바라볼 때 만년설로 덮인 레이니어산의 모습

은 그야말로 장엄하고 엄숙하였는데 막상 가까이에서 보니 눈으로 덮인 면적이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 않은 것 같아 조금 실망스럽기도 했고, 이러다 만년설마저 녹아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하였다.

레이니어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타코마 만 지역(Tacoma Bay Area)에 위치한 한식당(Korean Restaurant)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한국을 떠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른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인에게는 한국음식이 가장 좋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하기에 충분하였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는 시애틀 waterfront가 바다다보이는 건너편 해변에 들러 시애틀의 skyline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말이 해변이지 해변을 끼고 나 있는 2차선 도로 건너편에는 주거용 콘도들이 즐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큰 배들이 다니거나 정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애틀 waterfront의 물은 한없이 깨끗하고 맑아보였다. 어쩌면 주거지역 바로 앞의 바닷물을 그리고 큰 도시와 면해있는 바닷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을까?

넷째 날(2009년 7월 19일 일요일)

우리 일행은 오전에 시애틀의 한 한인교회에서 예배드

린 후 오후에는 시애틀 북부 Everett에 위치한 비행기 제조회사 Boeing사의 공장을 견학하였다. 이는 지식재산 해외연수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견학에 나섰다. 세계 최대 비행기 제조공장이라서 그런지 공장으로 바로 들어서지 못하고 우선 공장입구의 안내건물에 들러 그곳에서 배정된 안내인의 안내를 따라야 공장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안내건물은 Boeing사 비행기 제조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보여주는 영화 상영관, 기념품을 파는 커다란 가게, 비행기 박물관 및 휴게공간을 갖추고 있었으며, 공장입구에 있는 안내건물 치고는



만년설이 덮인 워싱턴 주의 상징 Mountain Rainier

꽤 크고 시설이 좋은 최신의 건물이었다. 그리고 보니 저 멀리 바라보이는 공장건물과 활주로를 품고 있는 대지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큰 길에서 공장으로 들어서는 지점에는 호텔이 있어서 공장방문이 관광의 한 코스를 짐작케 하였다. 공장건물은 조립공장, 도색공장, 시험비행을 담당하는 건물 겸 격납고 모두 세 채로 구성되어 있었다. 건물의 수는 많지 않았지만, 건물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건물들이었다. 일례로 조립공장은 건물 부피로 따질 때 세계 최대라고 하며, 건물의 극히 일부에 붙어있는 유명 영화배우가 팔을 벌리고 바람을 향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은 건물에 붙은 광고판으로는 세계 최대라고 한다.

안내건물에서 15분 정도의 Boeing 선전영화를 관람한 후 영화관 안의 관람객은 두개조로 나뉘어 안내인과 함께 버스에 올라 조립공장 건물로 향하였다. CCTV가 설치된 몇 개의 철문을 통과한 후에야 공장건물 중 우리 일행을 포함한 삼십여 명의 방문객이 내리도록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지하실을 통하여 조립라인을 구경할 수 있는 데크(deck)로 오르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었다. 조립라인은 전망 데크로부터 아래로 구경할 수 있었다. 우리가 본 공정은 Boeing 747과 최신 기종인 787의 조립라인이었고, 우리의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조립라인의 거리가 수십 미터에 달하는 규모였다. 100%는 아니겠지만, 일요일인데도 조립라인은 가동되고 있었다. 안내인에 따르면 공장건물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총 수는 3만 명이라고 한다. 비행기 제조가 얼마나 기술집약적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서 Boeing 747 비행기 한대에 들어가는 전선의 길이가 (필자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여 안타깝지만) 자그마치 십 수 마일에 달한다고 한다. 참고로 1마일은 1.6 km의 거리이다. 최신 기종으로 개발된 Boeing 787은 연료효율이 매우 높아 한 번 주유로 세계 어느 공항에든지 쉬지 않고 날아갈 수 있어 항공사들이 선호하는 기종이지만, 화물용 비행기로는 용량이 큰 Boeing 747이 아직도 인기가 높다고 한다.

안내건물로 돌아와 휴게공간에 자리를 잡고 준비해 온 샌드위치로 점심을 해결하고 돌아오는 길에 일행 중 한 분이 Boeing 조립공장 및 박물관 견학을 하며 얻은 지식으로 퀴즈를 내었다. 여객기가 비행고도를 왜 10000 m 상공으

로 유지하며 비행하는지? 더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인지? 비행기의 가장 효율적인 엔진의 위치는 날개 위, 날개 중심, 날개 아래 중 어디인지? 답이 궁금한 독자는 필자에게 연락하면 퀴즈를 낸 교수분께 연결해 줄 수 있음을 밝힌다.

다섯째 날(2009년 7월 20일 월요일)

William Gates Hall에 들어서니 또 입이 딱 벌어질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10 cm 정도 두께의 바인더가 꽉 채워진 이 주간의 강의록. 이래서 법은 필자와 같은 범부(凡夫)가 공부하기에는 어려운 것인가 보다. 다섯째 날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Patent Basics 1 (Toshiko Takenaka) – Patentability: 특허요건(Requirements for Patent) 중 대상물(\$101), 공개의무(\$112); Bilski 이전의 특허대상 시험(Pre-Bilski Federal Circuit Eligibility Test); Bilski 이후의 특허대상 시험(Post-Bilski Federal Circuit Eligibility Test)
- Patent Prosecution 1, 2 (David Carson) – Pre-Filing and PTO Practice: 강의의 목적은 “특허 법률대리인으로서 어떻게 일 할 것인가?” (“How to work as a patent attorney?”)이고 강의록 없이 Mr. Carson의 경험을 white board 이용하여 나누었음
- Patent Enforcement 1 (Paul Meiklejohn) – Litigation: 소송의 7단계는 소송제기 전 단계(prefiling consideration), 변론(pleading), 증거게시(discovery), 재판 전 단계(pretrial), 재판(trial), 재판 후 명령 요청(post-trial motions), 항소/상고(appeal); 특허침해(patent infringement)에 대한 두 가지 심사는 Affirmative patent infringement, Declaratory judgment action

다음호에 계속

▶ 발명특허 2009_9